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 도 자 료**	(배포) 2019. 4. 12.(금) 08:00
즉시 사용		
비고	* 공동배포 : 산업통상자원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해양수산부, 농림축산식품부, 외교부, 원자력안전위원회	
담당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과장 최대원, 사무관 안혜리 (044-200-2379, 2380)
	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	과장 정하늘, 사무관 고성민 (044-203-4880, 4884)
	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	과장 김현선, 사무관 김현진 (043-719-2170, 2158)
	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과장 서정호, 사무관 구본찬 (044-200-5610, 5611)
	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	과장 정혜련, 사무관 민동명 (044-201-2271, 2276)
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	과장 김상욱, 서기관 박지은 (02-2100-7675, 7674)
	원자력안전위원회	과장 배순덕, 사무관 백지예 (02-397-7351, 7357)

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

-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(SPS)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.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함
-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, **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됨**
-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, 국민소통을 강화하겠음
- 향후에도 정부는 **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**해 나갈 것임

□ '19.4.11. 17:00(제네바 시간), 세계무역기구(WTO)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(DS495)의 **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**하였습니다.

< 분쟁의 주요 경과 >

- '11. 3.14.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,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**수입규제조치 실시** (수입 시 방사능 검사, 일부 품목 수입금지)
- '13. 9.9.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('13.8.8.) 후 우리 정부는 **임시특별조치*** 시행
 *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
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
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(370→100Bq/kg)
- '15.5.21. 일본 정부, 우리측 조치 중 일부*에 대해 **WTO 제소**
 *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
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
- '18.2.22. WTO 패널(1심),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 *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(차별성·무역제한성·투명성), 합치 1건(검사절차)
- '18.4.9. 우리 정부,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
- '19.4.11. WTO 상소기구(최종심),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 *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

□ 동 보고서에서 **WTO 상소기구**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**4개 쟁점** (차별성·무역제한성·투명성·검사절차) 중 **일부 절차적 쟁점(투명성 중 공표의무)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**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**환영**의 뜻을 표합니다.

○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**지금까지 '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'이라는 원칙**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.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.

□ 이번 판정으로 **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**됩니다.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,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**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**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**소통을 강화**해 나가겠습니다.

○ 향후에도 정부는 **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** 나갈 것입니다.

*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,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임

→ 세슘관리기준: △(한국,일본)100Bq/kg, △(국제식품규격위원회:CODEX) 1,000Bq/kg, △(미국) 1,200Bq/kg

* 현재 일본산 농·수산물의 '방사능 검사결과'는 식약처 홈페이지(매일 공개), 참고자료(매주 배포)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

참고 1 WTO 분쟁 경과

□ 우리측 조치

○ '11. 3.14. 동일본 대지진('11.3.11)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, 일본산 식품에 대한 **수입규제조치* 시행**

*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(**수산물 8개현 50품목**, 농산물 13개현 26품목)
②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**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(농산물, 가공품)**
③ 일본산 식품 세슘기준 100Bq/kg(국산, 타국가산 370Bq/kg)

○ '13. 9.9. 도쿄전력 원전 **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**('13.8.8.) 이후, 강화된 **임시특별조치* 시행**

* ① **수산물**은 8개현 **모든 품목**, 농산물은 14개현 27품목 수입금지
② 세슘 검출 시 **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대상 확대(수산물·축산물 추가)**
③ 국산, 타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 강화(370→100Bq/kg)

□ WTO 분쟁 경과

○ '15.5.21. 일본 정부, 우리측 조치의 일부를 WTO 제소* (양자협의 요청)

* ① 8개현 수산물 28품목 수입 금지 ②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결과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

○ '15.6.24.~25. 한·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

○ '15.8.20.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, '15.9.28. 패널 설치

○ '16.2.8. 패널 구성

○ '16.7.12.~13.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○ '17.2.13~14.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○ '18.2.22. 패널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
○ '18.4.9. 한국 정부,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

○ '18.12.3~4. 상소심 구두심리 회의 개최

○ '19.4.11.* 상소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
* 스위스 제네바 시간으로 17:00(한국시간 4.12 00:00)

참고 2 상소 판정 요지

1 **(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)** 패널(1심)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치를 기초로, **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**에도 불구하고 **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**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**자의적 차별**이라고 판단하였으나,

⇨ **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함.** 즉,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함.

➡ **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**

2 **(불필요한 무역제한성)** 우리나라의 **적정한 보호수준(ALOP)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**에도, **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/year만 적용**하여 **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**하였으나,

⇨ **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(자연방사능 수준,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)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함.**

➡ **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**

3 **(잠정조치 여부)**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으나,

⇨ **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**

4 **(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)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함**

- 다만,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'문의처(enquiry point)'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함